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2제1항 중 “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”를 “에 따라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”로, “관련된”을 “관련된 일반측량 자료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따른”을 “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
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가족호텔업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1조의2(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)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<u>지적측량 자료</u> 를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과 <u>관련된</u> 지적측량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	제21조의2(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) ① ----- ----- <u>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</u> ----- -- <u>관련된 일반측량 자료 및</u> -- ----- -----.
② 교육감은 시·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1항에 <u>따른</u> 지적측량 자료를 해당 시·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</u> ----- -----.
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2조(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법 제9조제27호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</u> 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1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<u>한국전통호텔업</u> 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

④ (생 략)	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가족 호텔업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---------	--